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6796
----------	-------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심사경과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 경과
2203830	김주영의원	2024.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4.11.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li> <li>·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2.5.) 상정 후 축조심사</li> </ul>
2213574	이용우의원	2025.1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1.30.)</li> <li>·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2.5.) 상정 후 축조심사</li> </ul>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2.5.)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2.6.)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공공부문에서 근로하던 기간제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형태로 전환한바, 공공부문에서 근로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공무직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였음.

이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통일성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바, 정부는 2020년 3월 국무총리훈령으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활동기한이 규정되어 있어 공무직근로자의 구체적인 임금·수당 기준, 공무직근로자의 법제화, 인사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였음.

이에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회를 상시적·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일반 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등과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수행하고자 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무직근로자등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공공부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위탁받은 사업주에 고용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공무직위원회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위원회 운영의 원칙을 명시함(안 제4조제3항).

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제5항).

마.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무직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두도록 함(안 제9조·제10조).

#### 4. 부대의견

가. 헌법기관은 소속된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 노무관리를 함에 있어 공무직위원회의 심의·조정 내용을 존중하고, 공무직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또는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며, 헌법기관의 공무직근

로자등에 대한 고용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직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와 정부는 공무원직근로자등의 차별해소 및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법률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을 살펴 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들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가목에서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기관의 소속 기관을 포함하고,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공립 유치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관서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바.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라 한다)

2. “공무직근로자등”이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라.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공공부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에 고용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무원근로자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인력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사 및 노무 관리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등 근로조건과 그 밖의 처우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4. 공공부문에서의 사업장·산업·업종·지역 등 다양한 노사교섭 방식의 촉진,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사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6.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7. 연 1회 이상 인원규모·직종·임금체계 등에 대한 정기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무원근로자등의 인사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된다.

1. 재정경제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무조정실 제1차장, 기획예산처차관 및 인사혁신처 차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동수로 구성하되, 각각 5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가. 공무원근로자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공무원근로자등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인사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공무원근로자등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공무원근로자등이 공무원과 같은 공공부문의 구성원으로서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제공자임을 고려할 것

2.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무원근로자등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

3. 심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의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인사혁신처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시·도 소속 실장급 공무원 및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3. 공무직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제4

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각각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

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 관계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공무직발전협의회) ① 위원회에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관리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그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무직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직근로자등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 근로조건,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

③ 발전협의회에 중앙행정기관등, 지방자치단체, 유치원·학교, 시·도 교육관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등 공무직근로자등이 종사하는 부문에 따라 분야별협의회를 둔다.

④ 그 밖에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획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둘 수 있다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 지  
방자치단체, 유치원·학교, 시·도 교육관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  
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가공무원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지  
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공  
공단체나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  
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발전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 운영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